

IV 정 공 제 산 명 세	㉑총 급여(㉒다만 외국인단일 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)		197,995,500	㉔ 종합소득 과세 표준	153,594,878			
	㉓근로소득공제		16,709,910	㉕산 출 세 액	38,966,053			
	㉔근로소득금액		181,285,590	세 액 감 면	㉖ 「소득세법」			
	기 본 공 제	㉕본 인	1,500,000		㉗ 「조세특례제한법」 (㉘ 제외)			
		㉖배 우 자	1,500,000		㉙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			
		㉗부양가족(3 명)	4,500,000		㉚ 조세조약			
	추 가 공 제	㉘경로우대(1 명)	1,000,000		㉛세액 감면 계			
		㉙장 애 인(1 명)	2,000,000	㉜근로소득	500,000			
		㉚부 녀 자		㉝자녀	공제대상자녀(2 명) 300,000 출산 · 입양자(0 명)			
	인 민 보 험 료 공 제	㉛국민연금보험료		대상금액 2,907,900 공제금액 2,907,900	연 금 계 좌	㉞ 「과학기술인공제회 법」 에 따른 퇴직연금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
		㉜공적 연금 보 험 료 공 제	㉞ 공무원연금	대상금액 공제금액		㉟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」에 따른 퇴직연금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
			㉟ 군인연금	대상금액 공제금액		㊱연금저축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
			㊱ 사립학교교직원연금	대상금액 공제금액		㊲-1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
			㊱ 별정우체국연금	대상금액 공제금액				
		㉝보 험 료	㉞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)	대상금액 6,658,000 공제금액 6,658,000		㉞보험료	보장성	공제대상금액 1,000,000 세액공제액 120,000
			㉟ 고용보험료	대상금액 -632,160 공제금액				장애안전용 보장성
			㉞주 택 자 금	㉞ 주택임차 차입금원리 금상환액		대출기관 4,000,000 거주자	㉟의료비	
	㉟ 장기 주택 저 당 차 입 금 이 자 상 환 액			2011년 이전 차입분	15년 미만	㊲교육비		
		15년~29년						
		30년 이상						
		2012년 이후 차입분 (15년 이상)	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	㊳정치 자금 기부금	10만원 이하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	
			그밖의 대출		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	
			2015년 이후 차입분		15년 이상	고정금리면서 비거치상환대출	10만원 초과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
	10년 ~15년	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						
	㉟기부금(이월분)			㊴ 「소득세법」 제 34조제2항제1 호 에 따른 기부금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		
	㊳계		10,658,000	㊵ 우리사주조합 기부금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		
	㊴ 「소득세법」 제34조 제3항제1 호의 기부금 (종교단체 외)			㊶ 「소득세법」 제34조 제3항제1 호의 기부금 (종교단체)	공제대상금액 360,000 세액공제액 72,000			
	㊵ 「소득세법」 제34조 제3항제1 호의 기부금 (종교단체)			㊷계	공제대상금액 700,000 세액공제액 140,000			
㊶계		157,219,690	㊸표준세액공제	338,018				
그 밖 의 수 득 공 제	㊸개인연금저축			㊹납세조합공제				
	㊹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			㊺주택차입금				
	㊺주 택 마 련 저 축 수 득 공 제	㊺ 청약저축		㊻외국납부				
		㊻ 주택청약종합저축		㊼월세액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		
		㊼ 근로자주택마련저축						
	㊼투자조합출자 등			㊽세액 공 제 계	1,138,018			
	㊽신용카드 등 사용액		3,624,812	㊾결 정 세 액 (㊽ - ㊿)	37,828,035			
	㊾우리사주조합 출연금			㊿실효세율(%) (㊿ / ㉑) × 100	19.1%			
	㊿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							
	㊿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						
㊿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							
㊿ 그밖의 소득공제 계		3,624,812						
㊿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								

